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안 번호	
----------	--

제안연월일 : 2025. 12.

제안자 : 기획재정위원장

1. 대안의 제안경위

의안명	의안번호	대표발의자 (제출자)	발의일 (제출일)	경과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2200695	김미애의원	2024. 6. 20.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7차 기획재정위원회(2024. 11. 13.)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경제재 정소위원회 회부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2201400	김영환의원	2024. 7. 5.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7차 기획재정위원회(2024. 11. 13.)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경제재 정소위원회 회부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2201623	김윤의원	2024. 7. 11.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7차 기획재정위원회(2024. 11. 13.)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경제재 정소위원회 회부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2205324	박대출의원	2024. 11. 6.	제424회 국회(임시회) 제2차 기획재정위원회(2025. 4. 24.)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경제재 정소위원회 회부

의안명	의안번호	대표발의자 (제출자)	발의일 (제출일)	경과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2210068	서왕진 의원	2025. 4. 23.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2025. 9. 8.)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경제재 정소위원회 회부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2212198	이수진 의원	2025. 8. 14.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6차 기획재정위원회(2025. 11. 12.)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경제재 정소위원회 회부

제429회국회(정기회) 제6차 경제재정소위원회(2025. 12. 4.)에서 위 6건의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이를 통합·조정하여 우리 위원회 대안을 마련하기로 함.

제429회국회(정기회) 제9차 기획재정위원회(2025. 12. 4.)에서 경제재정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받아들여 위 6건의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2.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 국회에 제출하는 재정 관련 서류에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따른 임대형 민자 소프트웨어사업 정부지급금추계서를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2제4호 신설).

나. 기획예산처장관은 대통령 승인을 얻은 분기별 예산배정계획을 지체 없이 국회에 제출하고, 예산의 배정을 변경하거나 배정된

예산의 집행을 보류하는 경우 분기별로 그 사유를 국회 소관 상임위 및 예결위에 제출하도록 함(안 제43조).

다. 국가가 출자·출연한 예산을 재원으로 하는 정책펀드가 출자한 펀드가 청산되는 경우 소관 중앙관서의 장이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청산금을 재투자할 수 있도록 하고, 소관 중앙관서의 장이 정책펀드의 당해연도 회수재원 현황 등을 국회 소관 상임위에 제출하도록 함(안 제53조제6항 및 제53조의2 각각 신설).

라.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필수의료를 집중적·안정적으로 지원하고 지역의 필수의료 강화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공급하기 위하여 「국가재정법」에 특별회계 설치 근거조항을 추가하려는 것임(안 별표 1 제24호 신설).

3. 부대의견

향후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 「필수의료 강화 지원 및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안(대안)」 심사 시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 간 협의 결과를 감안해 지역 필수의료 특별회계의 세입에서 보통세인 부가가치세를 제외하는 방안을 심사할 필요가 있음.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재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2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0조의3에 따른 임대형 민자 소프트웨어사업 정부지급금추계서

법률 제21065호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 제43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기획예산처장관은 제1항에 따라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분기별 예산배정계획을 지체 없이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⑦ 기획예산처장관은 제4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라 예산의 배정을 변경하거나 배정된 예산의 집행을 보류하는 경우 분기별로 분기만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그 사유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53조제6항을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⑥ 국가가 출자·출연한 예산을 재원으로 하는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벤처투자모태조합,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

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식품투자모태조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책펀드가 출자한 펀드가 청산되는 경우 소관 중앙관서의 장이 미리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는 경우에는 청산금을 국고로 회수하지 아니하고 재투자할 수 있다.

제5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3조의2(정책펀드에 관한 국회보고) 국가가 출자·출연한 예산을 재원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책펀드의 소관 중앙관서의 장은 해당 정책펀드의 제53조제6항에 따른 재투자 계획, 해당 연도 회수재원 현황 및 투자·계정 간 이전 현황 등이 포함된 보고서를 작성하여 매년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별표 1에 제2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4. 「필수의료 강화 지원 및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 제24호의 개정규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임대형 민자 소프트웨어사업 정부지급금추계서의 국회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9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작성하는 정

부지급금추계서부터 적용한다.

제3조(예산의 배정에 관한 적용례) 제43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분기별 예산배정계획을 작성하거나 예산의 배정을 변경하거나 배정된 예산의 집행을 보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정책펀드 출자 펀드의 청산금 재투자에 관한 적용례) 제53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책펀드가 출자한 펀드가 청산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9조의2(재정 관련 자료의 제출) 기획재정부장관은 매년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 3. (생략) <u><신설></u> 법률 제21065호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 제43조(예산의 배정) ① (생략) <u><신설></u> ② ~ ⑤ (생략) <u><신설></u>	제9조의2(재정 관련 자료의 제출) ----- ----- ----- -----. 1. ~ 3. (현행과 같음) 4. 「 <u>소프트웨어 진흥법</u> 」 제40조의3에 따른 임대형 민자 소프트웨어사업 정부지급금추계 선 법률 제21065호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 제43조(예산의 배정) ① (현행과 같음) ② <u>기획예산처장관은 제1항에 따라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분기별 예산배정계획을 지체 없이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u> ③ ~ ⑥ (현행 제2항부터 제5항까지와 같음) ⑦ <u>기획예산처장관은 제4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라 예산의 배정을 변경하거나 배정된 예</u>

제53조(예산총계주의 원칙의 예
외) ① ~ ⑤ (생략)
<신설>

⑥ (생략)
<신설>

산의 집행을 보류하는 경우 분
기별로 분기만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그 사
유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
여야 한다.

제53조(예산총계주의 원칙의 예
외)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국가가 출자·출연한 예산
을 재원으로 하는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벤
처투자모태조합, 「농림수산식
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
한 법률」에 따른 농식품투자
모태조합 등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정책펀드가 출자한 펀드
가 청산되는 경우 소관 중앙관
서의 장이 미리 기획예산처장
관과 협의하는 경우에는 청산
금을 국고로 회수하지 아니하
고 재투자할 수 있다.

⑦ (현행 제6항과 같음)
제53조의2(정책펀드에 관한 국회
보고) 국가가 출자·출연한 예
산을 재원으로 하는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정책펀드의 소관

	<u>중앙관서의 장은 해당 정책편</u> <u>드의 제53조제6항에 따른 재투</u> <u>자 계획, 해당 연도 회수재원</u> <u>현황 및 투자·계정 간 이전</u> <u>현황 등이 포함된 보고서를 작</u> <u>성하여 매년 정기국회 개회 전</u> <u>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u> <u>제출하여야 한다.</u>
--	--